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직급여 신설 및 폐교연금 지급근거 삭제〉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요	3
2. 폐교연금 지급 근거 삭제	4
3. 구직급여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6. 2. 3.
3.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

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제48조의2·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요

□ 개정안은 ①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신설과 ② 30·40대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 및 사학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 폐교 및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폐교연금”이라 함)의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두 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음.

□ 구직급여 제도는 폐교연금 지급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지원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문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폐교연금 지급 근거 삭제에 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신설하고자 하는 구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2. 폐교연금 지급 근거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폐교연금의 지급 근거(「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1) 준용)를 삭제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가 폐교로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때부터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행	개정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 ----- ----- ----- -----제4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44조부터----- -----

1)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 7.>

1. 65세가 되는 때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

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
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
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
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
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
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
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
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
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
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

-----.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
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호
및 제3호-----

-----.

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6. (생략) ③·④ (생략)	----- -----.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은 급여의 종류, 급여액 및 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³⁾을 준용하여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이 6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하되(제1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제4호).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의 폐교 및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아 연령과 상관없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이러한 폐교연금 조기 수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폐교 등으로 조기에 퇴직한 경우 퇴직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때 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65세가 되는 때 부터 퇴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일반 가입자와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30~50대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65세에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일반 가입자와 비교하여 10~30년 더 일찍 퇴직연금을 개시하여 장기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수급사유 및 퇴직연도 별 퇴직연금 개시 연령>

퇴직연도 수급사유	2016~ 2021	2022~ 2023	2024~ 2026	2027~ 2029	2030~ 2032	2033~
65세가 되는 때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 초과정원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 경과한 때 등	퇴직 사유 발생시	퇴직 사유 발생+ 1년	퇴직 사유 발생+ 2년	퇴직 사유 발생+ 3년	퇴직 사유 발생+ 4년	퇴직 사유 발생+ 5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준용 내용),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7조 및 제8조 정리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별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인원	1	18	129	240	21	409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둘째, 최근 학령인구 감소⁴⁾로 매년 100여 개의 사립학교가 폐교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조기 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 측면에서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조기 지급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급자 수	302	295	319	338	351	377	406	409
지급액 ^주	4,020	4,048	3,685	3,628	3,407	3,028	2,995	2,999

주: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도달 전까지 지급된 금액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천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령인구	8,672	8,461	8,263	8,074	7,888	7,701	7,497	7,302	7,147	6,785

자료 : 통계청 KOSIS 지표(장래인구추계, 2023.12.공표)

5)

<최근 5년 간 폐교(사립학교) 기관 수 변동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유치원	134	137	128	106	118
중학교	0	0	1	0	1
고등학교	1	2	0	2	0
전문대학	1	0	0	2	0
대학교	0	1	3	0	0
학교법인	1	2	2	0	0
합계	137	142	134	110	119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 이후 폐교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다음과 같이 지속되어 왔는 바, 사학연금 가입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20·21대 국회 폐교연금 폐지에 관한 입법 논의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대	이은재 의원안 (2016.11. 15.)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 상 직제·정원의 개·폐에 따른 퇴직연금 조기 지급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폐교연금을 폐지	폐교연금 폐지 시, 비자발적 중도 퇴직자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
	임재훈 의원안 (2019.11.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 상 사립대학 소속 교직원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
21대	김철민 의원안 (2020.12. 11.)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상 직제·정원의 개·폐에 따른 퇴직연금 조기 지급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폐교연금을 폐지	21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비자발적 중도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개정안 동시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 폐교연금 조정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024.11.5.)」이 계류 중이며, 각각의 개정안은 입법취지는 동일하나 그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김문수 의원안과 문정복 의원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문수 의원안 (16531)	문정복 의원안 (5263, 5323)
폐교연금	폐교 등 퇴직사유 발생 시 <u>퇴직연도에 따라 5년 이내</u> 퇴직연금 지급(사망 시 까지)	<u>폐지</u> - 폐교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u>65세부터 퇴직연금 지급</u>	<u>수급기간 조정</u> <u>퇴직 즉시 3년간 퇴직연금 지급 후 65세까지 정지</u> <u>65세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지급</u> * 구직지원금 중복수급 시 퇴직연금 지급액에서 가지급 구직지원금 공제
폐교연금 폐지에 따른 소득공백 대안	폐교연금 지급 시 불필요	구직활동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성격의 <u>구직급여 지급</u>(4~9개월)	구직활동 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성격의 <u>구직지원금 지급</u>(4~9개월)

□ 두 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김문수 의원안은 현행 폐교연금을 폐지하여 65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문정복 의원안은 폐교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지급기간만 조정하여 퇴직 즉시 3년간 지급한 후 정지하였다가 65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개정안의 요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다음 각 목의----- ----- ----- ----- ----- ----- ----- -----.
<신설>	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신설>	나.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급여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
·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
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
·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신 설>

제33조(급여) -----

-----지급하며,
교직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에 따
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4(구직급여) ① 퇴직한 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다.

1. 재직기간(제31조제5항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이 6개월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제33조의5에 따른 수급자격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
로 할 것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신 설>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5(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① 교직원 또는 제33조의4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자(이하 “구직급여 수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임용 당시 정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
2. 교직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

<신 설>

하여 퇴직한 경우

나. 제2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
로 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18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
을 충족한 사람과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
고 있는 사람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의 수급 요건
을 충족한 사람

제33조의6(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
간)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
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제5항 및 제46조제1항을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생략)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준용한다. 다만, 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현황, 물가상승률, 경기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기간은 12개월의 기간에 공단이 제33조의4제1항의 퇴직을 확인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은 “공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로, “이직”은 “퇴직”으로 본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액(제33조의4에 따른 구직급여는 지급 전액으로 한다)-----
-----.

<u>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u>	<u>은 경우</u> 2. <u>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u> 3. <u>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 제33조에서는 교직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구직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 조항에서 ① 지급요건 및 수급자격의 제한(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② 지급액 및 수급기간(안 제33조의6), ③ 권리의 보호(안 제40조), ④ 재원(안 제48조의2) 및 ⑥ 관리 운영(제58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구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각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vs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고용보험법」	「사학연금법 개정안」
① 지급 요건 및 수급자격의 제한	* 제40조제1항(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 이직한 근로자 중, 아래 모두 해당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u>180일 이상</u>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미 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제33조의4(구직급여 지급요건) - 퇴직한 교직원 중, 아래 모두 해당 · 재직기간 <u>6개월 이상</u>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미해당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공단에서 퇴직 여부, 재취업 노력 등 확인

구분	「고용보험법」	「사학연금법 개정안」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중,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 중, ·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사업주 권고 이직 ·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 * 제40조제2항(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 제33조의5(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없음 · 정년 도달자, 임기 만료 퇴직자 · 교직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등으로 퇴직 ·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 중, - 전직 또는 자영업 위해 퇴직 - 금고 이상 형 확정, 징계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 등으로 퇴직 - 기타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 - 구직급여 지급 제한 · 18개월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자(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은 제외) · 조기퇴직연금 수급 승인자 · 연계퇴직연금 수급 요건 충족자
②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 평균임금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 3,500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 기초일액 하한액: 최저기초일액 *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제33조의6(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60% - 기초일액: 기준소득월액÷총일수 - 기초일액 상한액: 11만 3,500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기초일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지급기간: 재취업 노력 인정받은 기간(최대 270일) *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지급 중단
③ 권리보호	*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전액	○ 제40조(권리의 보호) - 구직급여 전액 압류 금지 규정
④ 재원	*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80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실업급여 지급 규정	○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 구직급여 추가
⑤ 관리·운영	* 제116조(벌칙)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58조(학교기관의 책임) - 학교기관 장이 공단에 손해배상하는 사유로,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지원금을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를 추가

- 또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6./ 의안번호 5323)」이 유사한 입법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① 명칭

- 김문수의원안과 문정복의원안은 모두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와 유사한 실업지원 제도를 「사학연금법」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도입취지, 지급요건 및 재원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해당 급여의 명칭을 각각 ‘구직급여(김문수의원안)’와 ‘구직지원금(문정복의원안)’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조항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하고, 지급대상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하는 등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제도 시행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⁶⁾에서는 고용보험을 적용받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 못하는 제대군인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유사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명칭을 ‘전직지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급여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직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② 구직급여 지급요건(안 제33조의4)

□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부로서, 「고용보험법」의 규정에⁷⁾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것이 요구됨. 즉, 수급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요건임.

둘째,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와 구직활동이 필요함.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급부이므로,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급여의 계속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7)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6. (생략)

셋째, 재직기간 등 일정한 기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임.

-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 제33조의4는 ‘재직기간, 취업의사 및 능력, 구직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정복의원안도 동일한 내용을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두 개정안 모두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대신 ‘재직기간’을, ‘180일 이상’ 대신 ‘6개월 이상’을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학연금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③ 수급자격의 제한(안 제33조의5)

- 김문수 의원안과 문정복 의원안은 동일하게 수급자가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①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임용당시 정해진 임기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③ 자기 사정으로 퇴직 한 교직원(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퇴직,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학교기관의 장의 권고로 퇴직한 경우)’ 등은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④ 18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거나, ⑤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33조의5의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58조⁸⁾의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본인의 의사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나 퇴직연금 등과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만, 개정안 제33조의5제1항제2호 나목에서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같은 항제3호 다목에서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각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급부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됨.

따라서 ‘이에 준하는 사유’와 같이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공단’이 구직급여 제한사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에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김문수의원안 (제33조의5제1항제2호 나목)	수정 의견
2. 교직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 또는 <u>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u>	2. ----- ----- 나. -----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u>
3.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u>공단</u>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 다. ----- <u>대통령령으로</u> ----- ----- -----

④ 지급액 및 수급기간(안 제33조의6)

□ 개정안 제33조의6(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에서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함)⁹⁾ 상한액과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5항¹⁰⁾ 및 제4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도록함으로써 지급 수준의 적절성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음(문정복 의원안과 내용은 동일함).

9) 사학연금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득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을 총 일수로 나눠 일단위로 환산한 값임

10) 「고용보험법」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르면 현행 기초일액 상한액은 11만 3500원이고,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만8,100원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 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일액 상한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준용하되, 기초일액 및 그 하한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11)을 준용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기준소득월액¹²⁾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학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특수성, 수급자 간의 형평성¹³⁾, 연금채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비교>

구분	구직급여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일액	○ 기초일액×60%	○ 기초일액×60%
기초일액	○ 기준소득월액의 일단위 금액 －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소득월액: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기초일액 상한액	○ 11만 3,500원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조정 가능	○ 11만원 3,500원 * 조정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액 변경 고려

11)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3) 가령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하한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경우 신설되는 구직급여 수급액이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등 문제 발생 가능

구분	구직급여 (「사학연금법 개정안」)	구직급여 (현행 「고용보험법」)																										
기초일액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일단위 금액 －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3만 733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 4만 280원 －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2만 7,337원 － 기능직 사무직원: 2만 4,503원	○ 최저기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상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9,860원)을 곱한 금액																										
지급기간	○ (구직지원금/구직급여) 재취업 노력/실업을 인정받은 기간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6">재직기간/피보험기간</th></tr><tr><th>1년 미만</th><th>1년 이상~3년 미만</th><th>3년 이상~5년 미만</th><th>5년 이상~10년 미만</th><th>10년 이상</th></tr><tr><td rowspan="2">퇴직일/이직일 현재 연령</td><td>50세 미만</td><td>120일</td><td>150일</td><td>180일</td><td>210일</td><td>240일</td></tr><tr><td>50세 이상</td><td>120일</td><td>180일</td><td>210일</td><td>240일</td><td>270일</td></tr></table>		구분		재직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일/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분		재직기간/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일/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 등 해당 조항 정리

□ 다만, 개정안 제33조의6제1항에서 기초일액에 대한 정의를 ‘기준소득월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총일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정복의원안과 같이 ‘30’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33조의6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 상한을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1항에서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¹⁴⁾을 준용하여 ‘기초일액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후, 그 상한을 다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체계 및 내용 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33조의6제1항에서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14)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기초일액 상한을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33조의6(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 ①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 상한액과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제5항 및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초일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해보상급여 준비금 적립액 현황,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일액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의6(구직지원금일액 및 수급기간) ① ----- ----- ----- ----- 제45조제1항 ----- ----- ----- ----- 30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교직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한편,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준용하여 판단하도록 한 문정복의원안(안 제33조의4제6항)과 달리 개정안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미 개정안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중단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 중단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문정복의원안(제33조의4제6항)과 같이 해당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수정의견(문정복의원안 반영)
-	제33조의6(구직급여일액 및 수급기간) ④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업의 기준 및 신고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¹⁵⁾ 를 준용한다.

⑤ 권리의 보호(안 제40조)

□ 개정안과 문정복의원안 모두 제40조(권리의 보호)에서 ‘구직급여 지급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38¹⁶⁾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¹⁷⁾에

15)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6)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

서도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⑥ 재원(안 제48조의2)

- 개정안과 문정복의원안 모두 신설되는 구직급여의 재원으로 연금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된 기금으로서, 현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및 부조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으로 약 4,440억 원이 조성되어 있음.

-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간 재해보상부담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반면, 요양급여 등의 지출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약 400억 원이 적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학연금 가입자 및 학교법인(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실업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재해보상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A) (부담금)	595	647	690	730	777	794	806	827	830	855
운용손익 등(B)	35	5	94	68	47	△25	△129	193	176	94
지출(C) (급여)	385	418	473	459	465	448	521	525	539	510
연적립액 (A+B-C)	245	234	311	339	359	321	156	495	467	439
기금누적액	1,319	1,553	1,864	2,203	2,562	2,883	3,039	3,534	4,001	4,440

<산재·고용보험 제도와 사학연금 제도간 비용부담-수급 체계 비교>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학연금(재해보상)
수급 대상	일반 사업장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율 (부담률)	사업주 0.6% ~ 18.5% (산업별 차등)	근로자 0.9 % 사업주 0.9 %	법인(사업주) 0.4086%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
사용 급여	산재보험급여		재해보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신설)

⑦ 관리 운영(안 제58조)

□ 개정안과 문정복의원안 모두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학교기관의 장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학연금 급여 일반에 적용되는 현행법 조항(제39조 및 제52조)¹⁸⁾에 따라, 공단은 이자 및 환수 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하고, 수급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체납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구직급여의 주요 지급요건인 퇴직사유 확인이 학교기관 장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18) 「사학연금법」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 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상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다만, 신설하는 안 제58조제3호는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데 협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협조’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단순한 행정적 보조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규정(개정안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서도 법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3호는 “관여” 또는 “방지의무 위반”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u>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데 협조한 경우</u>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3. <u>교직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의4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에 고의로 관여한 경우</u> 4. <u>제3호의 행위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u>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구직급여 신설 및 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폐지에는 이견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퇴직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통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교에 의한 퇴직 즉시 퇴직연금을 3년간만 지급한 후 65세에 재개되도록 하는 동일취지의 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일부수정

- (구직급여 신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 상태 악화, 단기재직자 증가 등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고용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이 폐교되더라도 전출이나 전보 등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이 불가피함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적용 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제도 내에 고용보험 유사급여를 신설하여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공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폐교연금 폐지) 다만, 구직급여는 퇴직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데, 고연령 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부득이 구직활동이 어려운 퇴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폐교연금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도퇴직자의 지원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발의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205263)」과 같이 폐교 연금을 3년간 지급 후 65세까지 정지하여 과도한 수급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될 폐교연금에서 구직급여액 공제)

문 의 처

02)6788-5192